

예 산 총 칙

제1조 2010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 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회 계 별	세 입 · 세 출 예 산 총 액	일 시 차 입 한 도 액
계	547,884,213	18,599,526
일 반 회 계	433,978,083	13,019,342
특 별 회 계	113,906,130	5,580,184
기 타 특 별 회 계	12,117,478	363,524
· 주택사업특별회계	769,537	23,086
· 교통사업특별회계	6,609,746	198,292
·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	4,365,236	130,957
· 기반시설특별회계	372,959	11,189
공 기 업 특 별 회 계	101,788,652	5,216,660
·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7,900,000	3,000,000
· 하수도사업특별회계	38,400,000	1,152,000
·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35,488,652	1,064,660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3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제4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5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576,020천원 으로 한다.

제7조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30,000,000천원으로 한다.

제8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